

국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

정희남*

[목 차]

- | | |
|-----------------------|-------------------------|
| I. 서론 | 3. 국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
| II. 본론 | III. 결론: 향후 학대피해노인 지원체계 |
| 1.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 | |
| 2. 법무부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 | |

[요 약]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호 지원체제로 이원화 되어 있다. 각 기관의 수혜자격과 전문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효과적인 노인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학대피해노인의 실효성 있는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학대피해노인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정을 위한 상담이나 사후관리 및 조치에 불과한 수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향후 학대피해 노인 지원체계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노인학대 지원체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I. 서론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는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호 지원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 각 기관의 수혜자격과 전문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효과적인 노인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 노인학대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므로 노인학대의 종결은 가해자의 변화를 조건으로 한다. 이에 학대피해노인의 실효성 있는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학대피해노인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정을 위한 상담이나 사후관리 및 조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학대피해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를 법무부 지원체계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대피해노인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

1) 관련기구 및 조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학대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년 전국에 17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2006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관하였으며, 2016년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전국에 30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 대상자는 가족 또는 타인으로

부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경제적 학대 및,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기 또는 방임된 노인 또는 자신이 스스로의 생존에 요구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기방임노인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피해자, 학대행위자를 포함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대를 유발하는 조건을 변화시키고 학대위험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업관련 전국적 홍보, 노인학대 상담 통합전산망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활동, 전국 노인학대 사례 현황파악 및 보고서 발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신규 및 재교육 실시, 각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자료실 운영, 시설 내 노인권익보호활동, 노인학대예방 홍보대사 운영,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실시, 노인학대예방 교육 교재 및 도구 제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필요서비스 및 지원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2)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 ① 상담사업: 노인학대피해자와 학대행위자를 상담,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학대피해자와 가족의 문제사정, 노인학대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노인학대피해자와 가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교육사업: 노인학대를 예방, 노인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해 신고의무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한다
- ③ 홍보사업: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시행한다
- ④ 지역사회 연계사업: 학대피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대관련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유기적 서비스 망을 활용, 협력사업으로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협력기관 및 자원을 발굴한다

(3) 서비스 내용

- ① 상담서비스: 상담자로부터의 심리적 지지를 통해 노인학대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개별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학대행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의 문제해결과 중재를 위한 가족상담을 제공한다.
- ② 복지서비스 연계: 피해학대노인의 욕구를 평가해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주 영역은 경제적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건강 관련 서비스(방문요양서비스, 주간 및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요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도시락 배달 등), 기타 기관과 연계(피해학대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기초해, 사회복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상담소, 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노인일자리, 노노 홈케어 등)한다
- ③ 의료서비스: 신체적 학대로 인해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 이송하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행함. 또한 통원, 입원치료 또는 건강검진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법률서비스: 학대피해노인이 법률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법률 자원연계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학대피해자가 학대행위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노인학대피해자의 고소절차와 관련하여 지원하거나 학대행위자를 고발한다.
- ⑤ 일시보호서비스: 일정기간(3개월) 동안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인학대피해자 전용쉼터에 입소하여 보호 한다
- ⑥ 정보제공서비스: 학대피해 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학대 재발생시 안내, 학대 재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알려 준다

2. 법무부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

1) 관련 조직 및 기관

법무부의 범죄피해지원 업무는 인권국에서 담당하며,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직접서비스는 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달된다.

2) 대상

법무부 노인학대피해자 보호체계의 대상은 노인학대 피해를 입은 모든 노인이다. 단, 노인학대피해자가 법이 정한 범죄피해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가, 법률구조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기관에 차이가 발생한다.

3) 서비스 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참여보장,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등이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스마일센터와 연계한 심리치유, 임시주거지 지원, 법률지원, 법률상담터 사업 등 손실복구지원정책을 통해 노인학대피해자가 입은 신체, 정신,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고 범죄이전의 삶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인학대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그 친족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거나,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거나, 기존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

터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체 기준에 따라 피해현장의 혈흔이나 기타 흔적, 오폐물 등을 정리해주는 서비스인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의료지원, 취업 및 경제적 지원, 기타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에 따른 위기극복과 위기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에 61개의 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센터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법무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① 상담지원: 범죄발생 직후부터 전화, 방문,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에 관한 상담 지원
- ② 경제지원: 범죄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는 피해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생계비나 학자금 지원
- ③ 의료지원: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치료비 지원 및 감면, 오랜 시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협력병원 등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과적 치료지원
- ④ 법률지원: 형사절차상 진행사항 정보제공,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신청서 작성 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등 신변보호
- ⑤ 환경개선지원: 범죄발생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보호와 더불어 응급진료 및 보호시설을 안내, 피해자 여러분이 범죄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정리하며 다시금 상처 받지 않도록 '범죄피해현장 정리' 지원, 임시주거 공간 제공 및 이사 비용 지원
- ⑥ 취업지원: 범죄피해자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확보 및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음

- ⑦ 도우미: 피해자 유형별 자조그룹 형성 도우미
- ⑧ 홍보: 피해자지원 관련 책자 발간, 홍보대사 및 홍보위원들의 포스터 제작
홍보 활동, 공익 홍보 방송, 인터넷 홍보
- ⑨ 연구 및 대외활동: 피해자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피해자학에 관한 교육,
피해자 활동을 위한 전문자원봉사자 및 상담원 양성, 외국 자료 연구, 번역
및 출판, 대외적인 정보교환 및 교류추진, 국제세미나 참가 및 발표

(2)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설립한 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 기관으로, 강력범죄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one-stop으로 제공하며, 주거지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일센터는 전국에 8개의 스마일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훈련된 전문인력이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형사사법기관, 상담기관, NGO 등과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심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료기법 개발 등 연구와 교육기능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①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전문가의 평가와 치료, 사회적 자원연계, 법률 지원 등 서비스 제공
- ② 사례지원 서비스: 각각의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타당한 시기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내방 시부터 최종 서비스 종결(사후관리종결)시까지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외부자원을 연계하여 사례지원서비스 제공
- ③ 네트워크 구축: 심리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④ 연구: 범죄피해 관련 연구를 통해 후유증으로부터의 회복 촉진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정책제언 활동에 참여
- ⑤ 교육 및 홍보: 피해자와 가족,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의 영향력을 알리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

(3)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이외에 18개 지부, 40개 출장소, 67개 지소로 구성되었으며 법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① 상담지원: 무료로 전화상담(132)과 공단사무실에서의 방문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이 가능함
- ② 소송지원: 무료법률지원, 배상명령제도

3. 국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서비스의 제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심리치유, 주거지원, 법률지원 등 손실복구지원정책을 통해 노인학대피해자가 입은 신체, 정신,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고 범죄이전의 삶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친족 간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학대 받은 노인학대피해자는 구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지 못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범죄피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은 최소한 신고가 접수되어 노인학대피해자가 범죄피해자 범주에 속해야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범죄피해자지원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신고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학대피해자는 부양 의무자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신고하기보다 학대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은 제도

적 장애로 인해 노인학대피해자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의 실제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낮다. 따라서 노인학대 사례가 은폐되지 않고 노인학대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법적용이 필요하다.

2) 통합성

노인학대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체계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보호지원 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 노인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주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지게 되는 기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음에도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노인학대피해자를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 사이에 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존재하면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졌고, 또한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기관 간 서비스 의뢰와 연계가 원활하고 따라서 서비스의 통합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노인학대피해자와 가족의 욕구를 복합적으로 사정하고, 욕구에 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기관의 내적 자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외적 자원까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통합성은 비교적 높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때문에 법무부 소속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스마일센터와의 협업이 어렵다.

3) 연속성

노인학대피해자가 원가족과 재결합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독립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지원은 종결된다. 그러나 장기간 노인학대에 노출되어온 피해노인의 경우 지역사회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 욕구를 지니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은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피해자가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학대피해자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서비스가 연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이에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피해자의 욕구에 맞추어 중단이나 지연 없이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다

4) 전문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는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일센터 종사자는 심리치료와 정서적 지원에 전문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이해, 학대에 대한 이해 등 노인학대피해자를 원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실천기술은 제한적이다.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혜자격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으며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자기방임은 노인이 학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의 유형과 신고접수 여부에 관계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노인학대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피해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두 기관 사이의 생산적이고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관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음에도 각 기관의 수혜조건과 전문성을 고려해 노인학대피해자 지원체계 사이에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론: 향후 학대피해노인 지원체계

본문에서는 학대피해노인 중심의 지원체계를 언급했는데, 노인학대 사례의 경우 대부분이 노인학대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시 노출되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 개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화 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

다. 형법 상 노인학대의 처벌은 경고조치에 그친다. 가족의 주소득원인 가해자의 처벌은 다른 가족원의 생계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변화는 노인학대 종결의 핵심이다.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함께 근본적인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가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도와 정책 등으로 향후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투고일: 2018. 1. 10. 심사일: 2018. 1. 17. 게재확정일: 2018. 1. 29.

■ 참고 문헌 ■

법무부 www.moj.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323&efYd=20170915#0000>(법
제처)

[Abstract]

Discussion on Support Systems for Victims of the Elder Abuse in Korea

Jung, Hee-Nam

Incheon Elder Protection Agency

There are two support systems for victims of the elder abuse in Korea: one is of Ministry of Justice and the other i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operative network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necessary for effective protection of Victims of the elder abuse, For the realistic and effective case work, it is needed to support victims of the elder abuse, abuser and their families. But currently in Korea, only counseling for assessment in the procedure of case management and follow-up service are provided rather than overall support. In this study, on the based of comparison between two systems, it is proposed direction of effective support policy of Victims of the elder abuse.

■ Keywords: Support Systems for Victims of the elder abuse, Support System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 Systems of Ministry of Justice